국회에서 의결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환 경 부 장 관 한 화 진

◉법률 제19309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은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3년 4월 3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소유한 자가 해당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제작 중단 및 대체 자동차의 우선 출고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협조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 용도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규정의 시행일을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경유자동차 제한 규정 시행일 전부터 계속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용도로 운행해 온 기존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